

부록 1. 사업계획 검토항목

[부록 표 1-1]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항목 체크리스트(예시)

검토항목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부서 조치결과
	세부근거자료	검토결과	
I. 형식적 요건			
1. 타당성조사의 내용			
1)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여부			
2) 비용 추정 여부 ◦ 유사실적 및 KDI 관련지침에 따른 비용산정방법			
3) 시설계획설계의 적정성 검토 여부 ◦ 분석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4) 수요 추정 여부 ◦ 분석 지역의 사회경제지표, 시설수요 현황 및 예측			
5) 편익 추정 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편익추정			
6) 경제성 분석 여부			
7) 재무 분석 여부 ◦ KDI 관련지침에 따른 분석 여부			
2. 사업계획 내용			
1) 사업개요(추진방식 포함) 제시 여부			
2) 법적검토 수행 여부			
3) 시설의 내용 및 기능, 역할 제시 여부			
4) 건설계획 제시 여부			
3. 총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1) 총사업비 세부내용 제시 여부			
2) 자금조달계획 제시 여부			
3) 출자자 구성 및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제시 여부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 명세			
1)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제시 여부			

검토항목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부서 조치결과
	세부근거자료	검토결과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1) 사업관리계획 제시 여부			
2) 유지보수계획 제시 여부			
3) 시설관리운영계획 제시 여부			
4) 시민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포함 여부			
5) 환경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민원 처리계획 등 포함 여부			
6.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			
1) 사용료 등 수입계획 제시 여부			
2) 지출계획 제시 여부			
3) 시설이용료 적정성 및 사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제시 여부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 법령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인지 여부			
2) 부대사업 내용(사유) 제시 여부			
3) 비용 추정 결과 제시 여부			
4) 수익 추정 결과 제시 여부			
5) 재원조달계획 제시 여부			
6) 부대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영향, 이용료 절감 등) 제시 여부			
8. 그 밖에 제안자가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무관청 지원 및 기타 요구사항 제시 여부			
II. 정책 부합성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 제시 여부			
1) 사업의 근거가 되는 타 법령 제시 여부			
2) 사업의 근거가 되는 정책(상위계획) 제시 여부 ◦ 서울시 중장기계획, 주요 시책, 투자우선순위와 부합 여부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지 제시 여부			
1) 사업의 중복 여부			

자료: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서울시 기획조정실, 2018)

[부록 표 1-2]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시 주요 검토항목

검토항목	검토내용
형식요건의 구비 여부	市 조례, 각종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양식 준수 여부
市의 주요 정책 부합	서울시 중장기계획, 주요 시책, 투자우선순위와 부합 여부 사업의 시급성, 조기준공 및 운영가능성
수요추정 및 시설추계의 적정성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및 개발여건 분석 市와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예측 市와 주변지역의 시설수요 현황 및 예측 시설규모 산정의 적정성 및 시민편의시설·공익시설 포함 정도
경제적 타당성 및 사업성분석의 적정성	시민편의 산정방법 및 산출규모 비용산정내역 및 비용산정액 수입산정내역 및 수입의 크기 분석방법 및 분석내용의 적정성 다른 투자사업과 비교한 우선순위
총사업비, 수익률, 시설이용료의 적정성	총사업비의 산정내역과 그 적정성 사업수익률의 적정성 시설이용료의 적정성과 사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건설계획의 적정성	시설계획·설계의 적정성, 친환경성 및 경관친화성 공사비 산정내역과 그 적정성 공정관리, 민원·지장물처리, 친환경공법 등
부대사업계획의 적정성	부대사업의 내용, 비용 및 수익, 재원조달계획 부대사업의 본 사업에 대한 영향, 이용료 절감효과
출자자구성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출자자 구성 및 출자에정자의 재무상태 자본구조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위험한 재원조달구조 포함 여부 타인자본의 조달조건 및 실현가능성 운영기간 중 자금운영계획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사업관리계획, 시설운영계획,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시민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 환경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민원처리계획
市 재정지원의 적정성	건설보조금 등 市의 각종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기타 市의 비금전적 지원사항의 적정성

자료: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서울시 기획조정실, 2018)

[부록 표 1-3] 제3차공고(안) 검토 양식 및 예시

시설사업기본계획 -도로부분-(201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사례2(○○터널 ('11년))	사례2(○○터널 ('19년))	본 사업(○○ 사업)	비 고
<p>1. 공고의 목적</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대한민국 법률 제10000호)을 말하며 그 개칭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민간부분의 사업 제안)의 규정에 따라 00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중략></p>	<p>1. 공고의 목적</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대한민국 법률 제10359호(2010. 06.08)을 말하며 그 개칭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의 규정에 따라 00터널 건설사업에 대하여 최초제안서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중략></p>	<p>1. 공고의 목적</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대한민국 법률 제10359호(2010. 06.08)을 말하며 그 개칭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의 규정에 따라 00터널 건설사업에 대하여 최초제안서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중략></p>	<p>1. 공고의 목적</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대한민국 법률 제15460호)을 말하며 그 개칭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민간부분의 사업 제안)의 규정에 따라 00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중략></p>	<p>1. 공고의 목적</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대한민국 법률 제15460호(2018. 3.13)을 말하며 그 개칭의 경우를 포함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9조(민간부분의 사업 제안)의 규정에 따라 00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중략></p>	
<p>⑦ 사업제안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지(또는 ⑥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정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지를 제외한 출자지)가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p>	<p>③ 100분의 5 미만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지가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 등으로 통지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⑦ 사업제안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지(또는 ⑥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정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지를 제외한 출자지)가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서면 통지하여야 함.</p>	<p>⑧ 사업제안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지(또는 ⑦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정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지를 제외한 출자지)가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즉시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단, 공공 전까지 건설출자지는 5% 미만이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음.</p>	<p>⑬ 사업제안자는 건설 및 운영기간 중 5% 미만의 출자지의 지분율을 갖는 출자지 또는 그 출자지의 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즉시 그 변경내역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함. 단, 공공 전까지 건설출자지는 5% 미만이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음.</p>	

[부록 표 2-2] 서약서 양식(예시)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의 (내 용)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 아 래 -

-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사업을 공정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_____

직 급 / 직 책 : _____

성 명 : _____

『○○○○ ○○○○○ 민간투자사업』 평가운영단장 귀하

[부록 표 2-3] 인수·인계확인서 양식(예시)

사업제안서 인수·인계 확인서

“○○○○ ○○○○○ 민간투자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제안 서류를 다음과 같이 인수·인계를 확인합니다.

평가구분	제안서류	형식 및 문양	제출부수	
			원본	사본
2단계 평가	1. 요약서	000쪽 이하		
	2. 제2권: 본보고서(기술 부분)	000쪽 이하		
	3. 제3권: 본보고서(가격 부분)	0050쪽 이하		
	4. 제5권: 부속서류	분량제한 없음		
	5. 제4권: 설계도서	기본설계 수준 (분량제한 없음)		
	6. 세부모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으로 작성		
	7. 기타:			

상기 평가제안 서류를 제출목록에 따라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함.

20 . . ()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

[부록 표 2-4] 회의록 양식(예시)

회 의 록

제 목 :

일 시 : 20 . . () 00:00

장 소 :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내 용 :

1) 불임과 같이 평가위원별 배점계획을 확정함. 끝.

[부록 표 2-5] 평가보고서 양식(예시)

『○○○○ ○○○○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부문별 평가보고서
 - 2단계 평가(○부분) -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평가위원 :	(서명)

I. 종합의견

1. 평가항목1
 ○ 평가항목1-1
 ○ 평가항목1-2
 -
 2. 평가항목2
 ○ 평가항목2-1
 -

.....

II. 요소별 평가
【 기술부분 】

2.1. 평가항목1 (400)
 2.1.1 평가항목1-1 (50점)
 (1) 세부평가항목1 (30 : 배점)
 * 평가 기준 및 내용

평가 등급	A	B	C	D	E
점수	30	28.13	26.25	24.38	22.5
		20.63	18.75	16.88	15
					13.13

* 점수는 세부평가항목의 배점×평가등급의 백율을 곱하여 산정

○ 세부평가항목1 주요내용
 - (가칭)○○○○○○○○(주는 "○○○○○ ○○○" 에 대하여 ○○○을 제안함.)

○ 평가의견
 - (가칭)○○○○○○○○(주는 "○○○○○ ○○○" 분야에서 제안한 ○○○은 ○○○한 측면에서 타당하며, "○○○○○ ○○○" 분야에서 제안한 ○○○은 ○○○한 측면에서 양호함.)

○ 합상시 고려사항
 -

(2) 세부평가항목2 (60)

평가 등급	A	B	C	D	E
점수	60	56.25	52.5	48.75	45
		41.25	37.5	33.75	30
					26.25

부록 3. 협상 사례조사

1) 사례조사 개요

- 서울시가 수행한 교통분야 민간투자사업의 사례조사를 통해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조건의 간극을 줄여가는 과정을 제시
 - 최근 협상을 수행한 도로사업 2건, 철도사업 3건에 대해 회의록(협상결과보고서)과 실무자 인터뷰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함
- 서울시는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등에 협상을 위탁
 - 협상단장은 수탁기관에서 맡고 총괄업무는 주무부서(도로계획과 또는 도시기본시설본부)에서 수행함
 - 도로 및 철도 실무협상은 크게 사업비 및 운영비, 교통수요, 사업성, 실시협약 4분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음

- 비용 및 기술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도시기본시설본부에서, 운영 및 운임은 서울교통공사의 관련부서에서 직접 검토
- 철도는 토목, 궤도, 건축, 송변전, 전기, 신호통신, 차량검수, 운전·운영 등 세부분야가 도로사업보다 복잡하고 협상단 규모도 큼
- 협상분야별 학술기관, 연구기관, 민간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

[부록 표 3-1] 협상단 구성 사례

구분	도로 (제물포/서부간선)	철도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협상주관기관	PIMAC	서울시립대학교	PIMAC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상단 규모	본협상단(12~15명), 실무협상단(12~15명)	본협상단(14명), 실무협상단(34명)	본협상단(18명), 실무협상단(33명)	본협상단(11명), 실무협상단(39명)
서울시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도시기본시설본부 교통정책담당관 서울교통공사	도시기본시설본부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본시설본부 도시교통본부 재정관리담당관 서울교통공사

2) 도로부문 사례조사

(1)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서울제물포터널은 2007년 제안된 사업으로 협상은 PIMAC 주관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12년에 종료(2012.6, 가서명)

[부록 표 3-2] 도로부문 사업의 개요

구분	내용
사업개요	· 양천구 신월동(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까지 7.53km(왕복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
협상일정	· 2011.07 협상개시(1차 본협상) · 2012.06 목동램프 설치 타당성검토(한국개발연구원) 결과를 반영 · 2012.12 2차 본협상(가서명)서 협상 종료
협상단	· 본협상단은 서울시와 PIMAC 외 교통수요, 도로, 터널, 환기방재, 운영, 회계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 · 실무협상반은 PIMAC에서 반장을 맡고 운영파트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
회의개최 및 협의내용	· 본협상 2차, 15회 실무협상 개최 · 협상 개시에는 2011년에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목동 램프에 대한 타당성검토(2012.6 완료) 등으로 협상에 총 17개월이 소요

주: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협상완료자료집」(한국개발연구원, 2012),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완료자료집」(한국개발연구원, 2014)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2)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007년 제안된 사업으로 협상은 PIMAC 주관으로 2010년에 시작하여 2014년에 종료(2014.10, 가서명)

[부록 표 3-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구분	내용
사업개요	· 영등포구 양평동(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안양천교)까지 10.33km(왕복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
협상일정	· 2010.09 협상개시(1차 본협상) · 2013.09 노선계획 변경제안(2014.05 재협상 시작) · 2014.10 2차 본협상(가서명)서 협상 종료
협상단	· 서울시와 PIMAC 외 교통수요, 건설, 방재, 운영, 회계,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
회의개최 및 협의내용	· 본협상 2회, 실무협상은 총 28회(1차 18회, 2차 10회) 개최 · 1차 협상(2010.09 ~ 2012.03) 후 노선계획을 변경하여 2차 협상(2014.05 ~ 2014.10) · 협상분야는 수요, 운영비, 총사업비, VE, 사업성, 실시협약(일반도로화에 대한 쟁점)

주: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완료자료집」(한국개발연구원, 2014)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

3) 철도부문 사례조사

(1)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우이신설선 도시철도는 2003년 제안된 사업으로 협상은 서울시립대 주관으로 2007년에 시작하여 2008년에 종료(2008.06, 가서명)

[부록 표 3-4]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구분	내용
사업개요	·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10.7km구간의 경전철사업
협상일정	· 2007.07 협상개시(1차 본협상) · 2008.06 3차 본협상(가서명)서 협상 종료
협상단	·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외 기술(토목, 건축, 설비), 교통수요, 사업성(법률, 회계, 금융) 전문가로 구성
회의개최 및 협의내용	· 본협상 3회, 실무협상은 105회 개최 · 사업성과 교통수요, 기술부문의 실무협상을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 · 협상 분야는 실시협약, 사업성, 교통, 토목, 궤도, 건축, 송변전, 시설전기, 기계설비, 신호, 통신, 차량/검수, 운전운영 등 13개이며 안건은 283건

주: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협상완료 보고서」(서울시, 2009)

(2)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신림선 경전철은 2006년 제안된 사업으로 협상은 PIMAC 주관으로 2010년에 시작하여 2015년에 종료(2015.01, 가서명)

[부록 표 3-5]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구분	내용
사업개요	· 영등포구 여의도와 관악구 서울대를 연결하는 9km구간의 경전철사업
협상일정	· 2010.04 협상개시(1차 본협상) · 2012.03 주간사 변경 승인(기존 주간사 워크아웃, 2011.12) · 2013.07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결과 · 2013.11 협상 재개요청(시→PIMAC) · 2015.01 3차 본협상(가서명)서 협상 종료
협상단	· PIMAC, 교통(도시교통본부), 사업성 및 기술, 실시협약(도시기반시설본부) 전문가로 구성
회의개최 및 협의내용	· 본협상 3회, 실무협상 및 실무소협상은 1차협상 시 196회, 재협상 시 103회 · 협상분야는 기술분야(토목, 궤도, 건축, 기계, 송변전/전차선, 시설전기, 신호, 통신, 차량검수, 운전운영), 교통,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사업성, 실시협약임 · 협상순서는 교통분야→기술분야→사업성→실시협약(안) 순으로 진행

주: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협상완료 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15)

(3)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동북선 경전철은 2007년 제안된 사업으로 협상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으로 2010년에 시작하여 2017년에 종료(2017.07, 가서명)

[부록 표 3-6]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례

구분	내용
사업개요	· 성동구 왕십리와 노원구 중계동을 잇는 약 12km구간의 경전철사업
협상일정	· 2010.11 협상개시(1차 본협상) · 2012.01 ~ 2013.07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으로 협상 잠정 보류 · 2014.02 ~ 2015.01 상계역 연장구간 포함 적격성재조사(PIMAC) · 2015.12 협상대상자 기업회생절차 개시, 지정 취소 및 차순위협상대상자로 변경 · 2016.01 ~ 2017.07 협상 수행 및 2차 본협상(가서명)에서 협상 종료
협상단	· 서울시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교통(도시교통본부), 기술, 사업성, 실시협약(도시기반시설본부) 전문가로 구성
회의개최 및 협의내용	· 본협상 2회, 실무협상 55회 · 교통수요, 기술 및 사업비, 사업성, 실시협약 4개 검토반이 총 55회 협상을 진행



[부록 표 4-2] 협상 결과(철도 예시)

첨부 1. 협상총괄표 (단위: 억원, 07.1.1 불변가 기준)

구분	제3차 계약안 (A)	상계계약안 (B)	협상결과안 (C)	중간 (C-B)	비고
사업 규모	연장	**km	**km	**km	-
	경차장수	**개소	**개소	**개소	-
공사기간	**개월	**개월	**개월	-	추가경정산 포함
사업비	공사비	****	****	****	-
	총사업비 (보상비제외)	****	****	****	-
	물가상승비	****	****	****	-
	건설자급이자	****	****	****	-
	총투자비	****	****	****	-
건설보조금	****	****	****	-	민부상 권과 반영
운영기간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년**월	-	30년 운영
보통요금	****원/일	****원/일	****원/일	-	30년 평균
사용료	****원	****원	****원	-	-
운영수입	****	****	****	-	-
부속사업수입	****	****	****	-	-
운영비용	****	****	****	-	-
금융 조건	신순위이자율	**% (**%)	**% (**%)	**% (**%)	-
	후순위이자율	**% (**%)	**% (**%)	**% (**%)	-
	물가상승률	**%	**%	**%	-
분변채권수익률 (채후수익률)	**% (**%)	**% (**%)	**% (**%)	-	

첨부 3. 운영비 협상결과표 (단위: 억원, 07.1.1 불변가 기준)

구분	제3차 계약안 (A)	상계계약안 (B)		협상결과 (C)		비고
		(B)	중간 (B-A)	(C)	중간 (C-B)	
운영비 합계	****	****	****	****	****	-
1. 인건비	인건비	****	****	****	****	-
	배출원가	****	****	****	****	-
	판매비와 관리비	****	****	****	****	-
2. 재료비	재료원가	****	****	****	****	-
	판매비와 관리비	****	****	****	****	-
	유지관리비	****	****	****	****	-
3. 유차비용	도복	****	****	****	****	-
	연도	****	****	****	****	-
	건축	****	****	****	****	-
	전기	****	****	****	****	-
	신호	****	****	****	****	-
	통신	****	****	****	****	-
	AFC	****	****	****	****	-
	기계설비	****	****	****	****	-
	감수	****	****	****	****	-
	차량	****	****	****	****	-
4. 보험료	완성보험공사불보합	****	****	****	****	-
	물신및기재물보험	****	****	****	****	-
	유지보합	****	****	****	****	-
	영업배상책임보험	****	****	****	****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	****	****	-
5. 운영자산 대채구입	운영설비 대채구입	****	****	****	****	-
	철도차량	****	****	****	****	-
	집기비용구입비	****	****	****	****	-

첨부 2. 총사업비 협상결과표 (단위: 억원, 07.1.1 불변가 기준)

구분	제3차 계약안 (A)	상계계약안 (B)	협상 결과 (C)	중간 (C-A)	중간 (C-B)	비고
총사업비(보상비 제외)	****	****	****	-	-	-
1. 공사비	****	****	****	-	-	-
2. 운영비	****	****	****	-	-	-
3. 용역비	****	****	****	-	-	-
(1) 도복	****	****	****	-	-	-
(2) 연도	****	****	****	-	-	-
(3) 건축	****	****	****	-	-	-
(4) 통신	****	****	****	-	-	-
(5) 기계설비	****	****	****	-	-	-
(6) 신호통신	****	****	****	-	-	-
(7) 용역비	****	****	****	-	-	-
(8) 전기요금	****	****	****	-	-	-
(9) 통신	****	****	****	-	-	-
(10) 차량	****	****	****	-	-	-
(11) 운영	****	****	****	-	-	-
(12) 용역비	****	****	****	-	-	-
(13) 설계감리비	****	****	****	-	-	-
(14) 용역비	****	****	****	-	-	-
(15) 철도차량	****	****	****	-	-	-
(16) 철도차량	****	****	****	-	-	-
(17) 철도차량	****	****	****	-	-	-
(18) 철도차량	****	****	****	-	-	-
(19) 철도차량	****	****	****	-	-	-
(20) 철도차량	****	****	****	-	-	-
(21) 철도차량	****	****	****	-	-	-
(22) 철도차량	****	****	****	-	-	-
(23) 철도차량	****	****	****	-	-	-
(24) 철도차량	****	****	****	-	-	-
(25) 철도차량	****	****	****	-	-	-
(26) 철도차량	****	****	****	-	-	-
(27) 철도차량	****	****	****	-	-	-
(28) 철도차량	****	****	****	-	-	-
(29) 철도차량	****	****	****	-	-	-
(30) 철도차량	****	****	****	-	-	-
(31) 철도차량	****	****	****	-	-	-
(32) 철도차량	****	****	****	-	-	-
(33) 철도차량	****	****	****	-	-	-
(34) 철도차량	****	****	****	-	-	-
(35) 철도차량	****	****	****	-	-	-
(36) 철도차량	****	****	****	-	-	-
(37) 철도차량	****	****	****	-	-	-
(38) 철도차량	****	****	****	-	-	-
(39) 철도차량	****	****	****	-	-	-
(40) 철도차량	****	****	****	-	-	-
(41) 철도차량	****	****	****	-	-	-
(42) 철도차량	****	****	****	-	-	-
(43) 철도차량	****	****	****	-	-	-
(44) 철도차량	****	****	****	-	-	-
(45) 철도차량	****	****	****	-	-	-
(46) 철도차량	****	****	****	-	-	-
(47) 철도차량	****	****	****	-	-	-
(48) 철도차량	****	****	****	-	-	-
(49) 철도차량	****	****	****	-	-	-
(50) 철도차량	****	****	****	-	-	-
(51) 철도차량	****	****	****	-	-	-
(52) 철도차량	****	****	****	-	-	-
(53) 철도차량	****	****	****	-	-	-
(54) 철도차량	****	****	****	-	-	-
(55) 철도차량	****	****	****	-	-	-
(56) 철도차량	****	****	****	-	-	-
(57) 철도차량	****	****	****	-	-	-
(58) 철도차량	****	****	****	-	-	-
(59) 철도차량	****	****	****	-	-	-
(60) 철도차량	****	****	****	-	-	-
(61) 철도차량	****	****	****	-	-	-
(62) 철도차량	****	****	****	-	-	-
(63) 철도차량	****	****	****	-	-	-
(64) 철도차량	****	****	****	-	-	-
(65) 철도차량	****	****	****	-	-	-
(66) 철도차량	****	****	****	-	-	-
(67) 철도차량	****	****	****	-	-	-
(68) 철도차량	****	****	****	-	-	-
(69) 철도차량	****	****	****	-	-	-
(70) 철도차량	****	****	****	-	-	-
(71) 철도차량	****	****	****	-	-	-
(72) 철도차량	****	****	****	-	-	-
(73) 철도차량	****	****	****	-	-	-
(74) 철도차량	****	****	****	-	-	-
(75) 철도차량	****	****	****	-	-	-
(76) 철도차량	****	****	****	-	-	-
(77) 철도차량	****	****	****	-	-	-
(78) 철도차량	****	****	****	-	-	-
(79) 철도차량	****	****	****	-	-	-
(80) 철도차량	****	****	****	-	-	-
(81) 철도차량	****	****	****	-	-	-
(82) 철도차량	****	****	****	-	-	-
(83) 철도차량	****	****	****	-	-	-
(84) 철도차량	****	****	****	-	-	-
(85) 철도차량	****	****	****	-	-	-
(86) 철도차량	****	****	****	-	-	-
(87) 철도차량	****	****	****	-	-	-
(88) 철도차량	****	****	****	-	-	-
(89) 철도차량	****	****	****	-	-	-
(90) 철도차량	****	****	****	-	-	-
(91) 철도차량	****	****	****	-	-	-
(92) 철도차량	****	****	****	-	-	-
(93) 철도차량	****	****	****	-	-	-
(94) 철도차량	****	****	****	-	-	-
(95) 철도차량	****	****	****	-	-	-
(96) 철도차량	****	****	****	-	-	-
(97) 철도차량	****	****	****	-	-	-
(98) 철도차량	****	****	****	-	-	-
(99) 철도차량	****	****	****	-	-	-
(100) 철도차량	****	****	****	-	-	-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설보조금	****	-	****	****	****	****	****
보상비지원	****	****	****	****	****	****	****
지가지분 A	****	****	****	****	****	****	****
지가지분 B	****	****	****	****	****	****	****
신순위차임금	****	-	-	****	****	****	****
후순위차임금	****	-	-	****	****	****	****
조달차분합계	****	****	****	****	****	****	****

(3) 보합료

□ 타 사업 사례(철도, 도로) 등 고려하여 보합료 협상 원료

구분	보합	부보대상	상계계약 제안	정부제시안	사업자 제시안	협상결과
건설기간	건설공사보합	공사비+운영설비비	**% **%	**% **%	**% **%	**% **%
	예정이당상설	운영초기 1년 고정비(인건비,재료비 + 임대료(인건비,재료비))	**% **%	**% **%	**% **%	**% **%
	사용자배상	신설발전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 **%	**% **%	**% **%	**% **%
보합비용	완성토목공사불보합	공사비	**% **%	**% **%	**% **%	**% **%
	운전및기재물불보합	운영설비비	**% **%	**% **%	**% **%	**% **%
	후지보합	고정비(인건비+재료비, 임대료)	**% **%	**% **%	**% **%	**% **%
영업기간	영업배상책임보합	1.사고당 10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억
	사용자배상책임보합	본 사업의 직원의 인건비	**% **%	**% **%	**% **%	**% **%
사용자배상책임	영업기간 상설보합	영업기간 상설보합	포함/제외	포함/제외	포함/제외	포함/제외
	철도차량	철도차량	포함/제외	포함/제외	포함/제외	포함/제외
예정이당상설보합의 적용년도 후의 납입에 따른 제원(부보대상) 구조	-	-	-	-	-	-